

기부장려금단체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
------	------	------

1. 단체 인적사항

① 단체(법인)명		② 비영리민간단체 (사업자)등록번호	
③ 대 표 자		④ 단체(법인)설립일	
⑤ 소 재 지		⑥ 대 표 자 연 락 처 (주소·전화·휴대폰)	
⑦ 사업목적			

2. 기부금 관련

⑧ 기부금 모집의 목적
⑨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동의여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의 공개에 동의합니다.[] ※ 단체 홈페이지 주소 :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설립허가서(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) 2. 최근 5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3. 최근 5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
------	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⑦ 사업목적란은 신청단체(법인)가 경영하는 사업목적을 적으며,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- ⑧ 기부금의 모집의 목적란은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하려는 용도를 적으며, 사회복지·문화·교육·종교·자선 등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.
-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.
 -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
 -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·보관하며,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제3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
 - 「소득세법」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
 -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4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
 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
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
 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(제5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